

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

시행 : 2019. 3. 1.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「학사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9호(학점취득방법)에서 정하는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학생이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취득한 실적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대학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'사회봉사'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·비정치성 단체에서 무급으로 최소 32시간 동안 봉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봉사1, 사회봉사2, 사회봉사3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주관부서의 의무) ①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 주관부서에서는 강좌의 개설 및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사회봉사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는 미래문명원 글로벌봉사팀에서 담당한다.

제4조(교과목 개설) ① 교과목은 매 정규학기에 1학점 자유선택 과목으로 개설한다.

- ② 봉사활동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한다.

제5조(수강신청) ① 정규학기 수강신청 허용학점(최대학점)외로 1학점 신청이 가능하다.

- ②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한다.
- ③ 사회봉사 교과목은 수강학점취소 기간 외에 취소가 불가하다.

제6조(학점인정절차) ① 사회봉사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각 캠퍼스의 이수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학기애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- ② 학점인정관련서류는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.
- ③ 사회봉사 담당자는 봉사활동 수행학생의 제출서류를 접수 및 심사하여 성적을 부여한다.

제7조(학점인정) 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급제(Pass) 또는 낙제(Non-Pass)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.

- ②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, 이수하지 못하여 낙제(Non-Pass)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는다.
- ③ 사회봉사 취득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④ 사회봉사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기타) ①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.

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